



보도 일시	<전매체> 배포즉시	-		
담당 부서	상생협력정책관 불공정거래개선과	책임자	과 장	노형석 (044-204-7940)
		담당자	사무관	김미주 (044-204-7907)
			조사관	김진영 (044-204-7947)

중소벤처기업부, 수급사업자에게 부당 이익 수취한 (주)지에스리테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요청

- 9개 수급사업자들에게 도시락 등 신선식품 제조를 위탁하면서 성과장려금, 판촉비, 정보제공료 명목으로 부당한 이익을 수취한 (주)지에스리테일을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요청하기로 함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는 19일 ‘제21차 의무고발요청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하도급법을 위반한 (주)지에스리테일을 검찰에 고발토록 공정거래위원회에 요청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 의무고발요청제도(‘14.1.17. 시행)

- 공정거래위원회가 검찰에 고발하지 않은 소관 6개 법률* 위반사건에 대해 중소기업부가 중소기업에 미친 피해나 사회적 파급효과 등을 고려해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요청할 수 있는 제도

* 하도급법, 공정거래법, 대규모유통업법, 가맹사업법, 대리점법, 표시광고법

- 중소기업부가 고발 요청하면 공정거래위원회는 의무적으로 검찰에 고발

이번에 고발 요청하는 (주)지에스리테일은 성과장려금, 판촉비, 정보제공료를 부당하게 수취하여 하도급법 위반행위로 9개 중소기업에게 피해를 입혔다.

주요 위반내용은 아래와 같다.

(주)지에스리테일은 '16.11월부터 '19.9월의 기간동안 8개 수급사업자들에게 도시락 등 신선식품(FF(Fresh Food)제품) 제조를 위탁하면서 정당한 이유없이

매입액의 0.5% 또는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품대금에서 공제하는 방식으로 총 68억 7,900만원을 수취하였으며,

같은 기간 매월 폐기지원금 행사, 음료수 증정 행사 등 판촉행사를 진행하고 전체 판촉비용 중 126억 1,300만원을 납품대금에서 공제하여 수급사업자에게 부담토록 하였으며,

또한, '20.2월부터 '21.4월의 기간동안 9개 수급사업자들과 정보제공 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매월 평균 520만원~4,800만원을 납품대금에서 공제하는 방식으로 총 27억 3,800만원을 수취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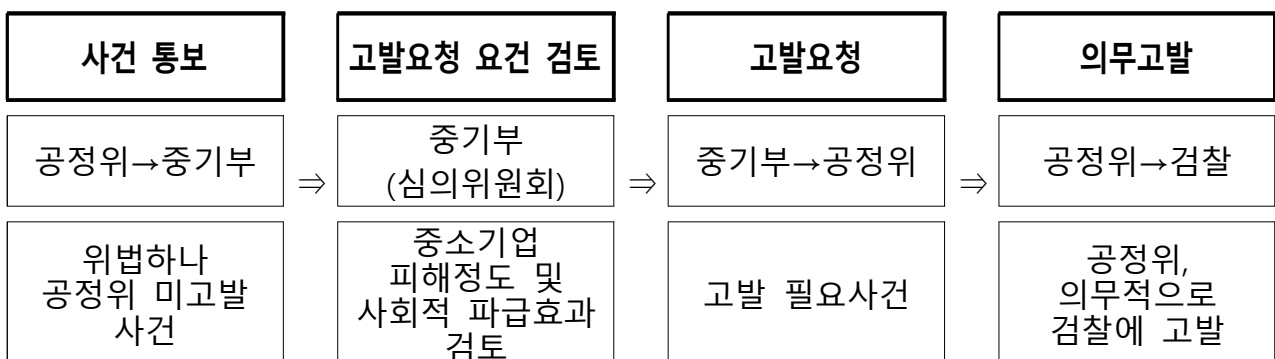
(주)지에스리테일은 이번 위반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재발방지명령과 243억 6,800만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은 바 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주)지에스리테일이 수급사업자들로 하여금 정당한 사유없이 4년 이상의 기간동안 약 222억원에 이르는 경제적 이익을 제공토록 하여, 중소기업에게 상당한 피해를 입혔음을 감안하여 (주)지에스리테일을 고발 요청하기로 했다.

중소벤처기업부 이대희 소상공인정책실장은 “의무고발요청제는 거래상 우월한 지위에 있는 사업자의 불공정한 거래에서 중소기업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이다”며,

“이번 의무고발을 통해서 편의점 업계에서 납품대금을 온전히 받을 수 있는 공정한 거래 환경이 조성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 의무고발요청제도 운영체계 >



※ 참 고

- 공정위에서는 하도급법 위반으로 검찰 고발 시, 위반기업에 벌점 3점 (다만, 기술유용, 하도급대금 부당 결정·감액, 보복 행위로 고발된 경우는 5.1점)을 부과하고, 최근 3년간 누적 벌점이 5점 초과 시 공공조달입찰 참여 제한 요청

